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의안번호      | 제 호                | 의결사항 |
| 의결<br>연월일 | 2022. . .<br>(제 회) |      |

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 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 출 자  | 국무위원 김현숙<br>(여성가족부장관) |
| 제출 연월일 | 2022. . .             |

법제처 심사를 마칩

## 1. 의결주문

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 
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가족친화 인증  
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두도록 하는 가족친화  
인증위원회를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·운영할 수 있는 위  
원회로 전환하려는 것임.

## 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9. 8. ~ 9. 19.)

##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 제목 “(가족친화 인증위원회의 설치 등)”을 “(가족친화 인증 심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인증과”를 “여성가족부장관은 인증과”로, “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”를 “필요한 경우에는”으로, “둔다”를 “구성·운영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12조제5항 중 “하되, 연임할 수 있다”를 “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7항에 따라 인증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.

제12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여성가족부장관은 인증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          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       정   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2조( <u>가족친화 인증위원회의 설치 등</u> ) ① <u>인증과</u>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<u>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</u> 가족친화 인증위원회(이하 “인증위원회”라 한다)를 <u>둔다</u> . | 제12조( <u>가족친화 인증 심의</u> ) ① <u>여성가족부장관은 인증과</u> -----<br>-----<br>-- <u>필요한 경우에는</u> -----<br>-----<br>----- <u>구성·운영할 수 있다</u> . |
| 1. ~ 4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 ~ 4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② ~ ④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<u>하되, 연임할 수 있다</u> . <단서 신설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⑤ -----<br>----- <u>한다. 다만, 제7항에 따라 인증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</u> 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⑥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⑥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신설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⑦ <u>여성가족부장관은 인증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</u> 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 |                  |
| 연 락 처         | (02) 2100 - 6082 |